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1338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변론 종결2018. 5. 16.

판결 선고2018. 6.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 건물(연와조 패널지붕 단층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 건물(조립식 패널조 단층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2) 11,342,555원 및 2017. 10. 1.부터 위 각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6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 건물(조립식 패널조 단층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2) 공동하여, 1,512,341원 및 2017. 10. 1.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나. 그 무렵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 건물(연와조 패널지붕 단층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 건물(조립식 패널조 단층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 건물(조립식 패널조 단층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전체의 2007.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임료상당액은 별지 감정평가 결과와 같고(다만, 두 번째 표 중 '임료 감정기간'란에 기재된 '2017. 8. 31.'은 '2017. 9. 30.'로 정정함), 2017. 10. 1.부터의 임료상당액은 월 141,825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위 'ㄱ', 'ㄴ', 'ㄷ'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임료상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원 미만은 반올림함).

'ㄱ', 'ㄴ' 부분 합계 45㎡	11,342,558원	104,625원
'ㄷ' 부분 6㎡	1,512,341원	13,950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감정평가사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11㎡ 및 'ㄴ' 부분 34㎡
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 합계 45㎡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6㎡ 지상에 건물을 공동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공동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구하는 2007. 10. 1.부터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1,342,555원(2007.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임료 상당 금액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원) 및 2017. 10. 1.부터 위 해당 토지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6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D은 공동하여 1,512,341원(2007. 10. 1.부터 2017. 9. 30.까지의 임료 상당 금액) 및
2017. 10. 1.부터 위 해당 토지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9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수영

별지